

2026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동물보호법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24분 완성

도서명 : 동물보호법

ISBN : 979-11-7393-082-9

발간일 : 2025-09-26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9,500원



동물보호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p16)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p21)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p75)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p92)

제6장 반려동물 영업(p102)

제7장 보칙(p123)

제8장 벌칙(p139~154)

[약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센터는 동물보호센터

학대자등은 동물학대행위자등

윤리위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은 윤리위의 위원

공용위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보호관은 동물보호관

명예보호관은 명예동물보호관

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복지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법인등은 법인, 기관, 단체

보호시설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1~5조

1. 목적

-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2. 정의

가.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에 해당

- 1) 포유류
- 2) 조류
- 3) 파충류, 양서류, 어류

- 단, 식용은 제외

나. 소유자등은 동물 소유자와 일시적,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자

다. 유실/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라. 피학대동물은 상해, 질병 유발 등 금지된

학대 받은 동물

마. 맹견

1) 사람의 생명/신체나 동물에 위해 가할 우려
있는 다음 개

- 도사견과 그 잡종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과 그
잡종 개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개
-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2) 사람의 생명/신체나 동물에 위해 가할 우려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바. 봉사동물은 사람,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다음 동물

1)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 농림부, 관세청,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 수색, 경계, 추적, 탐지 등에 이용

3) 소방청 119구조견

(비고) 소속 기관 포함

사. 반려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아. 등록대상동물은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

자. 동물학대는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

차.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공격성 판단

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이하 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 가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타. 동물실험

- 교육/시험/연구, 생물학적 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한 실험동물 대상 실험이나
그 과학적 절차

파. 동물실험시행기관(이하 실험기관)은
동물실험하는,

- 1) 국가기관
- 2) 지자체 기관
- 3) 연구개발기관
- 4) 다음 법인등

a) 식품등 제조/수입, 판매

- 식품등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약외품, 첨단바이오횜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 화장품;

마약

b) 의료기관

c)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임/위탁 받아 식품등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연구하는 법인등

d) 식품등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목적

법인등

5) 사료/농약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목적

법인등

6) 기초연구법상 법인등

7)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을

위해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

3.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누구든지 동물 사육/관리, 보호시 다음 원칙
준수

- 동물이

·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함

· 갈증,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게 함

·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함

· 고통/상해, 질병에서 자유롭게 함

· 공포,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함

4. 국가등과 국민의 책무

가. 국가등

1)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관리 시책
수립/시행

2) 인력/예산 확보 노력

-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일부를 예산내 지원 가능

3) 다음의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관련 활동 권장/지원 가능

- 동물보호 목적 민법상 법인

- 등록된, 동물보호 목적 비영리민간단체

4) 국민에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

5) 초/중/고 재학생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노력

- 이를 위해 예산내 지원 가능

나. 모든 국민은 국가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 노력

다. 소유자등은 동물 보호/복지 교육 이수 등 적절한 보호/관리와 학대 방지 노력

5.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